

#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 금고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의방법 지정요건을 별도로 명기함(안 제2조제2항).
- 나. 금고 수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감사관 및 예산담당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6. 8. ~ 6. 18. / 접수의견 1건(미반영 1건)

##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 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월전까지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대전광역시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①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보고)** ①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금고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33 10 (6) (4)  23 (7) (7) (6) (3)	
2.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0 6 5 4 5	
3. 시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8 5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19 5 5 5 4	
5. 지역사회기여 및 대전 광역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대전광역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0 5 5	

## 관계 법령

### □ 地方財政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7년 7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3. 상정일자 :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7. 19)  
상정, 심사,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 금고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의방법 지정요건을 별도로 명기함(안 제2조제2항).
- 나. 금고 수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함  
(안 제2조제3항).
- 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되어 2007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 본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수의방법 지정요건을 정하고, 금고 수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나 금고의 경우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금고지정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4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와 중도해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년 6월 11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금고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금고지정방법에 있어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있어 자치단체 추가항목 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항목별 점수편차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IV. 토 론 요 지 : 생 략

##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내용 불임)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2
----------	-----

제안연월일 : 2007. 7.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 1. 수정이유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의방법을 일부 삭제하고, 시민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금고지정시 수의 방법에 의한 규정을 일부 삭제함(안 제2조).
2. 시장이 금고운용 보고를 받은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8조).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배점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방법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고받은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별표 제2호중 "20"을 "19"로 하고, 같은 호라목중 "5"를 "4"로 한다.

안 별표 제3호중 "18"을 "20"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중 "8"을 "9"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5"를 "6"으로 한다.

안 별표 제4호중 "19"를 "18"로 하고, 같은 호라목중 "4"를 "3"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b>제2조(금고지정) ① (생략)</b></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p>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p> <p>2.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3.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 ⑤ (생략)</p>	<p><b>제2조(금고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b></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방법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p><b>제8조(금고운용보고) ① ~ ③ (생략)</b></p> <p><u>&lt;신설&gt;</u></p>	<p>③ ~ ⑤ (개정안과 같음)</p> <p><b>제8조(금고운용보고) ① ~ ③ (개정안과 같음)</b></p> <p>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고받은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개정안			수정안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관련)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계		100		계	100
1. 금융 기 관 의 대내외적 신 용 도 및 재무 구 조 의 안정성		33		1. 금융 기 관 의 대내외적 신 용 도 및 재무 구 조 의 안정성	33
		10			
		(6)			
		(4)			
		23			
		(7)			
		(7)			
		(6)			
2. 대전 광역시에 대한 대 출 및 예 금금리		20		2. 대전 광역시에 대한 대 출 및 예 금금리	19
		6			
		5			
		4			
		5			
3. 시민 이용 편 의성		18		3. 시민 이용 편 의성	20
		5			
		8			
		5			
4. 금고업 무 관리 능력		19		4. 금고업 무 관리 능력	18
		5			
		5			
		5			
		4			
5. 지역 사회기여 및 대전 광역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5. 지역 사회기여 및 대전 광역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5			
		5			